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1.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9일, 김미애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24.11.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4.11.20.)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2024.11.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공공건물 등의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 등의 이동수단으로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수가 부족하여 장애인 등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또는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연광석)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보행이 불편한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인 약 1,466,879명 중 전동휠체어 소지자는 90,037명, 전동스쿠터 소지자는 52,510명에 달하는 등 상당수 장애인들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2014년 자료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전동보장구 충전소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2016)에서는 전동보장구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전동보장구 이용 시 불편한 점으로 응답자 150명 중 18.6%가 ‘한번 충전 후 사용 가능 시간이 짧다’고 답했으며, 충전소 이용 시 불편한 점에 대하여 ‘설치 개수가 부족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30.5%로 나타났음.

참고로, 이동 중 배터리가 방전된 경험 유무에 대해 ‘있다’는 48.7%로 나타남.

이에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전동보장구 충전소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2016)를 반영하여 2019년도에는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사업」을 단년도 사업으로 실시한 바 있음.

다만, 동 사업 실시 이후,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관련하여 추가 설치 및 예산 요구 등이 없어 그대로 종료되었으며, 향후, 실시 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내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설치의무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의 입법조치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민간이 시설주인 대상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동보장구의 충전에 따른 전기 사용료 등 비용 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¹⁾

한편,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전동보장구충전기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보조기기법」”이라 함)에 따른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²⁾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기기로, 「장애인보조기기법」을 통한 지원 및 관리가 적합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장애인등편의법」보다는 「장애인보조기기법」 또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을 통한 설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그러나 「장애인보조기기법」은 보조기기의 교부 및 대여에 중점을

1) 한국지체장애인협회

2)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별표1] 3 12 24 24 휠체어용 배터리 및 충전기 (Batteries and battery chargers for wheelchairs)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동력을 공급하는 장치

두고 있다는 점³⁾, 비용보전과 관련해서는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설주에 대한 비용보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부칙의 시행일을 조정함.

3)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4. 그 밖에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8조(보조기기 교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교부·대여 또는 사후관리

2. 제1호에 필요한 비용 지급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은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또는 사후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등이 자신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적용하고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조기기 서비스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보조기기의 교부·대여·사후관리 및 비용 지급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설치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거나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붙임]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1.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에 걸리는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조정함(안 부칙).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중 “6개월”을 “1년”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①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u>장애인용 쇼핑카트</u>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① ----- ----- ----- ----- ----- ----- ----- <u>장애인용 쇼핑카트, 전동 보장구충전시설(전동휠체어 등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보장구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u> ----- ----- ----- ----- -----.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u>장</u>	② ----- ----- ----- <u>장</u>	② (개정안과 같음)

<u>애인용 쇼핑카트</u>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u>장애인용 쇼핑카트</u> 등 갖추어 두어야 할 용품의 종류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u>장애인용 쇼핑카트</u> 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	<u>애인용 쇼핑카트, 전동보장구충전시설 등</u>----- ----- ----- ----- -----<u>장애인용 쇼핑카트, 전동보장구충전시설 등</u>----- ----- ----- ----- -----. ③ ----- ----- -----<u>장애인용 쇼핑카트, 전동보장구충전시설 등</u>----- ----- ----- -----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u>6개</u>	③ (개정안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u>1년</u>
---	--	---

	<u>월</u>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과한 날부터 시 행한다.
--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을 “장애인용 쇼핑카트, 전동보장구충전시설(전동휠체어 등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보장구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각각 “장애인용 쇼핑카트, 전동보장구충전시설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①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 ----- ----- -----장애인용 쇼핑카트,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전동휠체어 등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보장구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등을----- ----- ----- -----.
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 갖추어 두어야 할 용품의 종류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 -----장애인용 쇼핑카트, 전동보장구충전시설 등----- ----- ----- -----장애인용 쇼핑카트, 전동보장구충전시설 등----- ----- -----.

③ 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u>장애인용 쇼핑카트</u> 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	③ ----- -----<u>장애인</u> <u>용 쇼핑카트, 전동보장구충전시</u> <u>설 등</u>----- ----- -----.
--	---